

그림 58. 배기후드 조작기기의 전면 위치

6. 가스안전밸브

- ▣ 밸브는 사용자가 쉽게 손이 닿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 중간 안전밸브의 위치가 너무 높다면,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 의뢰하여 높이를 낮출 수 있다. 이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그 높이 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 ▣ 밸브는 조작이 용이해야 한다.
밸브 조작기의 형태를 바 형태로 바꾸어 주면 조작이 간편하다.

7. 수도꼭지

- ▣ 수도꼭지 설치 시 높이와 위치는 휠체어 사용 혹은 서서 작업하는 경우 등의 필요 높이에 맞게 하여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 ▣ 수도꼭지는 싱글 레버식으로 한다.

▣ 호스식(자바라식) 수도꼭지의 경우에는, 개수대 사용 시 필요에 따라 물이 덜 튜는 높이에 수도꼭지를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수도꼭지 결이를 설치할 수도 있다.

8. 휠체어 공간

-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부엌에서는 작업대(하부 수납장) 및 부엌 가구 등을 배치한 후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지름 140 ~ 150cm)이 확보되어야 한다.
- ▣ 휠체어 사용 시 하부 수납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9. 수납 공간

- ▣ 상, 하부 수납장 외에 부엌용품을 수납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벽면 수납, 코너장, 선반 등을 설치하여 수납할 공간을 늘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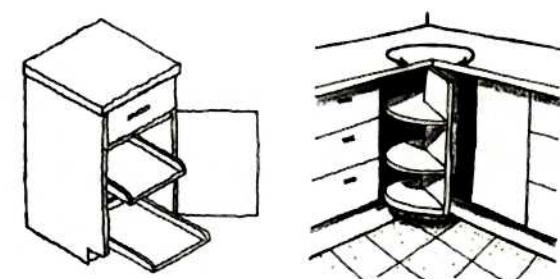


그림 59. 수납 가능한 하부 수납장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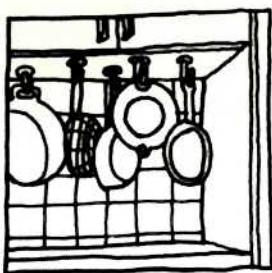


그림 60. 상부 수납장 밑에 설치한 고리를 이용한 수납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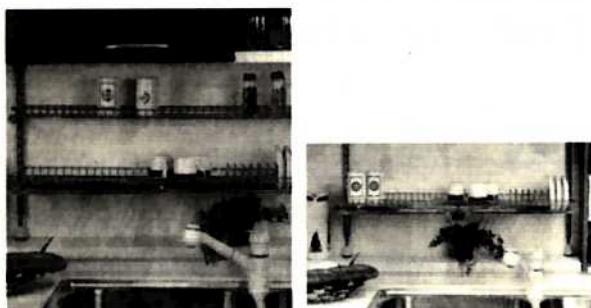


그림 61. 선반형 수납의 예

▶ 모든 수납공간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행거나 선반 등의 위치, 높이, 형태를 결정한다.

지체 장애인의 침실은 무엇보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침실 안에서 지체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가구, 창, 조명, 문 등을 스스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침실에서는 보조기구 사용 혹은 휠체어 사용을 위한 적절한 이동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1. 침대공간

- 실내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 침대를 사용할 시에는, 휠체어에서 침대로의 이동을 고려하여 휠체어와 같은 높이의 침대 높이(약 45cm)가 바람직하다. 침대 매트리는 너무 폭신거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 침실에는 병원 침대 혹은 손잡이가 있는 침대 등을 두는 것이 누웠다가 잡고 일어나기 쉽다. 기존 침대 옆에 수직바나 레일을 설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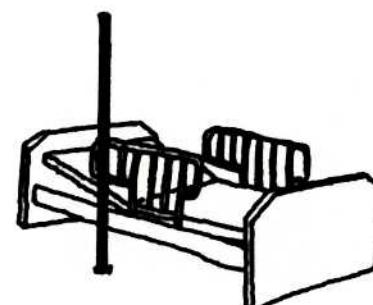


그림 62. 수직바가 있는 침대

- 침대에서 일어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상부 매트리스의 각도가 조절되는 침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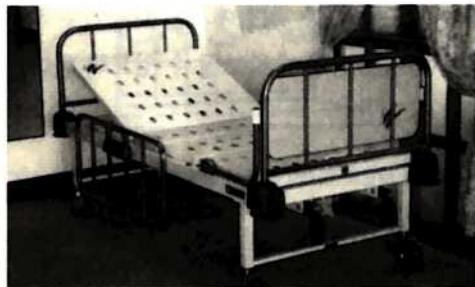


그림 63. 상부 매트리스의 각도가 조절되는 침대

- 침대 주변에는 작은 수납장을 두어 침대에서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전화기, 조명 스위치, 리모콘, 비상벨 등을 배치한다.
- 침대 주변에는 콘센트를 충분히 두어 전기 기구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콘센트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45cm정도로 한다.
- 침대 주변에는 75 ~ 90cm 정도의 여유 폭을 두어 휠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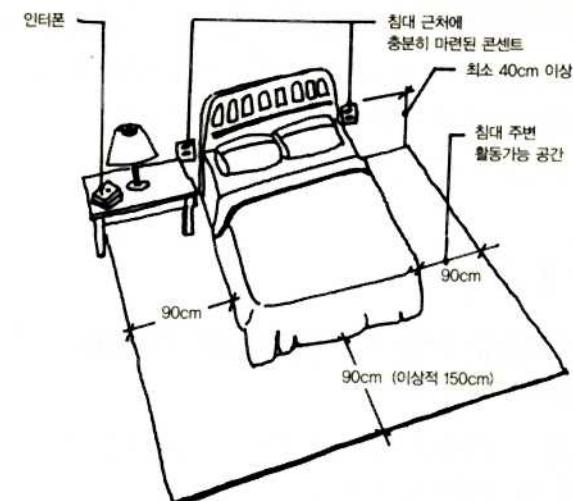


그림 64. 이상적인 침실 공간



그림 65. 하부개방 수납장

4. 장 (일반적 사방의 수납공간 참조)

- ▣ 침실에 있는 각종 가구는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 장의 문은 열고 닫기가 편리해야 하며 쉽게 수납할 수 있어야 한다.
- ▣ 수납된 물품들은 손이 쉽게 닿아 꺼낼 수 있어야 한다.

3. 휠체어 공간

- ▣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바닥 공간인 140 ~ 150cm 정도가 확보되어야 안전하고 편리하다.
- ▣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실 가구(침대, 장, 수납장 등)에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4. 창

- ▣ 침실에 창이 있는 경우, 창을 통해 밖을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접근과 창의 잠금 장치 사용이 용이해야 하며 개폐도 용이해야 한다.

욕실에서는 미끄러짐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므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개조하여야 한다.

1. 문폭

- ▣ 욕실 문의 통과 유효폭은 75cm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욕실 문은 욕실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하고, 좁은 욕실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밖으로 열리도록 한다.

2. 단차

- ▣ 욕실의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닥을 높여 욕실(화장실)내외의 바닥 높이를 같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때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트렌치를 반드시 설치해 주어야 한다. 특히 5cm 이상의 단차가 나는 경우에는 욕실(화장실) 바닥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좋다.
- ▣ 단차가 적을 때는 문틀의 위치를 내려 단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
- ▣ 욕실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바닥에 난방 코일을 깔아 욕실을 따뜻하게 하면 바닥에 앉아서 욕실을 사용할 때에 특히 유용하다.
- ▣ 바닥을 높이는 것 이외의 욕실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사로를 설치한다.
경사로는 욕실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 ▣ 목발, 크러치 사용자는 경사로에서 넘어지기 쉬우므로 설치 시 유의해야 한다.

- 휠체어 바퀴에 물이 묻어 있거나 경사로가 미끄러운 경우 안전손잡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 / 12 이 가장 안전하나, 면적의 협소로 경사로 기울기가 가파른 경우에는 측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이동 시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바닥

- 욕실의 바닥은 건조할 때나 물기가 있을 때에도 미끄럽지 않아야 한다.
- 기존 타일이 미끄러울 때에는 임시적이긴 하나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 이를 사용한다.

4. 안전손잡이

- 변기 주변, 세면대 주변, 욕조 주변 등에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때는 손잡이가 설치되는 곳의 벽을 강화하거나 앵커볼트 시공으로 안전손잡이를 설치한 후 흔들림 없이 사용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미 설치된 안전 손잡이가 흔들릴 경우에는 즉시 보수를 하여 안전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안전 손잡이는 잡았을 때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욕실 바닥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수층이 깨져 바닥으로 물이 샐 수 있으므로 바닥에 설치하는 안전손잡이는 방수에 특히 유의한다.

(1) 변기주변 안전 손잡이

- 실내에서 휠체어 사용 시 접근할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한 쪽 벽면에 설치하여 한쪽으로는 휠체어 진입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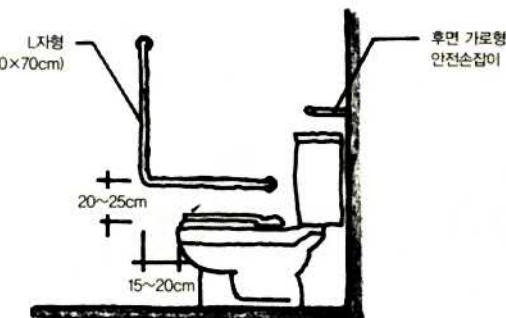


그림 66. 변기 주변의 안전 손잡이

- 그렇지 않다면, 접이식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67. 변기에 장착된 안전 손잡이



그림 68. 변기 양 옆 접이식 손잡이



좌우로 움직이는 안전손잡이



아래위로 움직이는 안전손잡이

그림 68-1. 여러 형태의 안전손잡이

▶ 측면 손잡이는 최소 길이가 105cm, 후면 손잡이는 최소 60 ~ 90cm가 되어야 하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90cm정도로 한다.

(2) 세면대 주변 안전 손잡이

▶ 목발, 크러치 사용자의 경우, 세면대 이용 시 몸을 지탱해 줄 지지대가 필요하므로 접이식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손잡이 설치 시 욕실에서 행동할 때 안전손잡이에 의한 행동의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

▶ 수건걸이의 높이를 조정하여 안전 손잡이로도 겸용할 수 있다. 수건걸이를 안전 손잡이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할 때 벽을 강화하거나 앵커 볼트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3) 욕조 주변 안전 손잡이

▶ 욕조를 사용할 때, 욕조에 안전하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 69. 욕조에 설치하는 안전 손잡이

● 욕실 (화장실)

▣ 욕조로 들어가고 나올 때 사용되는 안전 손잡이의 형태는 세로바, 가로바, 경사형, L형 손잡이 등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욕조 자체에 잡고 일어서기 쉬운 손잡이가 부착된 제품도 있다.



그림 70. 욕조 옆면에 부착된 안전손잡이

5. 세면대

- ▣ 세면대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세면대 접근이 용이하도록 세면대 앞면으로 120cm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며 폭은 최소 75cm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71. 전면이 오목하여 접근성을 높인 세면대

- ▣ 바닥으로부터 세면대 높이는 최소 75cm정도가 되어야 한다.
- ▣ 세면대 밑의 배관은 반드시 피복하여 긁히거나 화상과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 세면대를 낮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중목욕탕의 경우와 같이 앉아서 세수 및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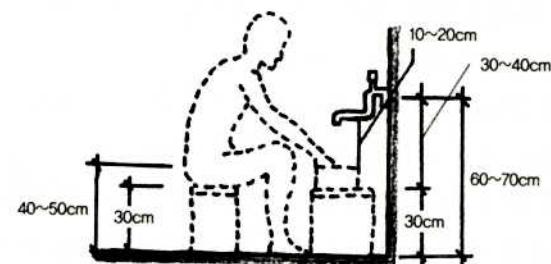


그림 72. 앉아서 세수와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

- ▣ 거울은 세면대 앞의 전면에 거울을 설치하거나 경사거울을 설치한다.



그림 73. 각도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용 거울

- ▣ 세면대를 부착할 때에는 사용시 안전하게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받침대나 다리 등으로 더욱 견고하게 해 준다.
- ▣ 세면대를 교체할 경우에는 세면대 주변에 여유있게 필요 물건들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코너형이나 일체형을 선택한다.
- ▣ 세면대에 필요 물건들을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벽에 부착되어 있으나 잡아 당겨 물품을 꺼내 쓸 수 있는 수납선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74]



그림 74. 접근성을 높인 세면대와 수납성을 강조한 수납통

6. 변기

- ▣ 변기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기 위해 한쪽 벽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면 좋다.
- ▣ 변기 중앙에서 옆 벽까지 최소 45cm의 공간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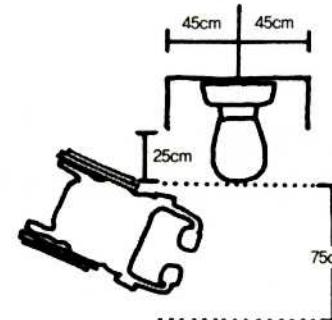


그림 75. 휠체어 접근시 필요한
변기 주변 공간

▶ 변기 사용 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도우미를 위한 공간의 여유를 고려해야 한다.

▶ 변기의 높이는 바닥에서 45cm내외로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설치한다.



그림 76. 시트를 이용해 변기 높이를 높인 경우

▶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보조의자나 받침대를 두어 변기로 옮겨 가기 쉽도록 하는 것도 좋다.

▶ 변기에서 손을 뺀 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휴지걸이를 설치한다.

7. 욕조

▶ 욕실은 욕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그러나 욕조가 있을 시에는 욕조 바닥에 미끄럼방지 매트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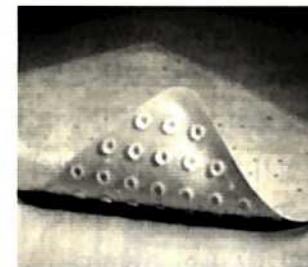


그림 77. 미끄럼 방지 매트

▶ 비누물 등이 욕조 밖으로 튀어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를 대비하여 욕조 앞에도 미끄럼방지 매트를 두는 것도 좋다.

▶ 휠체어에서 욕조로 옮길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나 걸터앉아 목욕 할 수도 있도록 욕조 양편에 걸쳐 놓을 수 있는 좌판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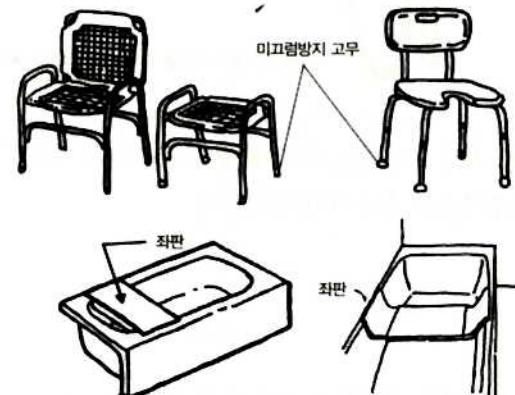


그림 78. 목욕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의자 및 욕조에 설치된 좌판

▶ 욕조의 깊이는 너무 깊지 않아야 한다. (40 ~ 45cm 정도)

▶ 원하는 온도로 설정해 놓을 수 있는 온도 조절기가 장착된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 욕조의 수도꼭지 설치 시 저절식(샤워기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것)을 설치하거나 샤워걸이의 높이를 달리하여 하나 더 설치하면 원하는 높이에서의 샤워기 사용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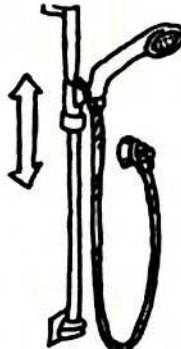


그림 79.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저절식 샤워기

▶ 욕조의 수도꼭지 조절기는 욕조 밖에서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중앙이 아닌 바깥쪽으로 치우쳐서 설치한다.

8. 샤워

▶ 욕조대신 샤워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높이조절이 가능한 저절식 샤워기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 샤워기 사용 시 벽에 붙어 있는 접이식 의자 등 앉아서 샤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형 의자인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그림 80. 접이식 보조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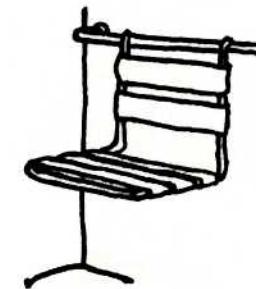


그림 81. 벽에 부착된 보조의자

▣⁶ 샤워기 주변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그림 82. 샤워실 안에 설치된 안전 손잡이

▣⁶ 서서 샤워하는 대신 온욕 효과가 있는 좌식 샤워 시스템의 샤워기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 83. 좌식 샤워 시스템 샤워기

9. 수납장

▣⁶ 욕실 및 화장실에는 욕실 용품들을 수납할 공간이 각자 필요한 곳
에 있어야 한다.

▣⁶ 설치된 수납장은 접근이 쉬워야 한다.

▣⁶ 수납장은 신체적 조건에 맞게 사용하기 쉬운 높이에 있어야 한다.

10. 경의(탈의) 공간

▣⁶ 욕실 한편에 탈의 및 간의할 공간을 두어 욕실 밖으로 나갈 때 목욕
(샤워) 후 갑작스러운 온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 욕실공간이 난방이 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그림 84. 욕실 행거

▣⁶ 욕조 옆에 접이식 좌판을 두고 탈의 및 간의를 편리하도록 배려할
수 있다.

11. 비상벨

- ▶ 욕실에서도 변기 주변, 욕조 주변 등에 비상시나 안전사고를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시 가족, 경비실, 관리사무실, 119, 혹은 이웃 등과 연락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욕조 주변에 비상벨을 설치할 경우에는 습기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 ▶ 비상벨은 줄로 잡아 당길 수 있도록 하여 넘어졌을 때에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추위

- ▶ 겨울철 추위로 욕실(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때에는 보조 난방기로 발열과 조명기능을 함께하는 발열등(HEAT LAMP)을 설치할 수 있다.
- ▶ 욕실은 바닥난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난방공사를 위해 바닥을 높이게 되면 실내와 욕실 사이의 단차를 없앨 수 있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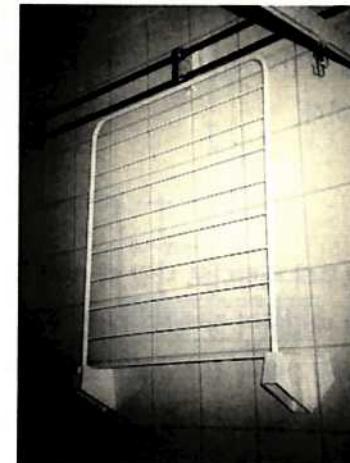


그림 85. 욕실용 접이식 랠래 걸이

실내에서 베란다로의 접근이나 이동이 쉬워야 한다. 소규모의 평형인 경우, 베란다를 실내 공간화 하고, 세탁 공간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1. 바닥 단차

- ▣ 거실이나 침실로부터 베란다로 나갈 때 샷시 문틀이 장애가 된다면 문틀을 바닥으로 매립하여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
- ▣ 바닥을 높여 세탁공간이나 건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가벼운 재료(경량재)를 사용하여 바닥을 높여야 한다.
- ▣ 단차를 높일 때에는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습기 및 빗물 혹은 세탁기 사용에 의한 물로 내부 재료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시판되고 있는, 흡수율이 0%에 가까운 방습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세탁공간

- ▣ 베란다에 세탁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세탁기에의 접근성 및 배수할 때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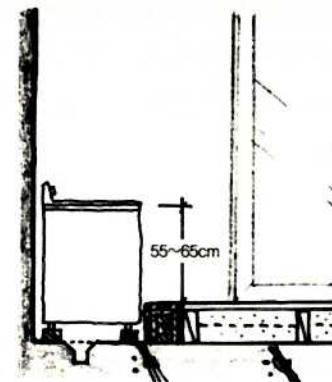


그림 86. 베란다의 세탁공간

- ▣ 세탁기로의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넣고 꺼내기 쉬워야 한다. 이를 위해 세탁기는 앞으로 넣고 꺼내는 형태의 드럼형 세탁기가 좋다.



그림 87. 드럼형 세탁기 및 건조기

베란다(발코니)

- 세탁기 사용 시 세탁기 조작 버튼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면이나 측면에 조작기가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 세탁 후 세탁물을 꺼내 널어 건조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드럼형 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3. 건조대

-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 세탁기 근처에 건조대를 둔다.
- 베란다에 건조공간의 확보가 어렵다면, 바퀴달린 건조대나 접이식 건조대 혹은 벽에 부착되는 탈착식 빨래줄을 설치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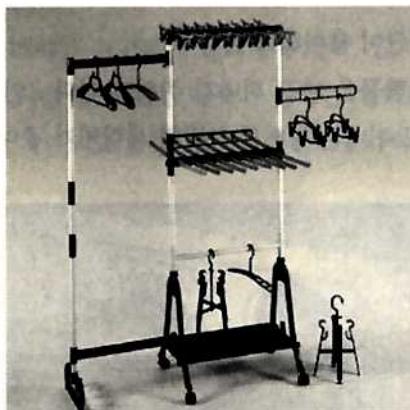


그림 88. 바퀴달린 건조대

- 건조대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편안하게 적당한 높이를 가져야만 한다. (일반적 사항의 높이 참조)

다용도실

다용도실에서는 수납 공간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모든 수납 공간으로의 접근성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1. 접근성

- 다용도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용도실 문의 폭은 80 ~ 90cm 정도로 한다.
- 문턱을 낮추거나 단차를 없앤다.
- 바닥은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수납공간

- 다용도실에는 충분한 수납공간을 둔다.
- 수납공간은 하부를 개방하여 휠체어 사용 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일반적 사항의 가구 및 수납공간 참조)

부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관련 업체 및 용품

자기진단표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등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99.1.21〉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② 삭제 〈99.1.21〉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 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의 경우 또는 교통수단 구입등의 경우에 있어 서의 편의시설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홍보
4.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그 시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등을 종합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등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14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를 작성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 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 도서로 본다.

제15조 (작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

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 ② 정부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촉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의시설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시정명령통)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삽 제 〈97 12 13〉

제25조 (벌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 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 (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

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연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편의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연이상 7연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하여 제23조, 제25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 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2조의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개조 관련 업체

(주)SD에이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802-5 화일빌딩 210호

Tel. 031-457-1840

홈페이지 www.sdaid.co.kr

· 노약자, 장애인 주택 전문 개조(상담, 설계 및 시공)

·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용 건축설비의 연구 및 개발, 판매

· 장애인, 노인, 환자용 복지용품 상담 및 판매

(주)우인편의시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2동 192-206 3층

Tel. 02-2263-2170

홈페이지 www.accesswooin.co.kr

· 주택 개·보수 공사

· 현관문턱제거, 다용도 손잡이, 베란다 마루, 미끄럼 방지, 화장실 개조, 씽크대 개조, 기타 개·보수 공사

(주)지암메디테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1-1 지암빌딩

Tel. 02-568-0068

홈페이지 www.jiammeditech.co.kr

· 수직형 리프트(매립식)

· 장애인용 화장실 및 경사로

· 기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주)송산특수엘리베이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73-12 시화국가산업공단 3마 225

Tel. 031-433-2255

홈페이지 www.songsan.co.kr

· 장애인, 노약자용 휠체어리프트

· 흄 엘리베이터 등 각종 엘리베이터 설치

신우프린티어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34-6

Tel. 02-588-5306

· 고정형 리프트 설치

건축 설계 및 가구, 시설 설비업체

건축사무소 "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67-5 영백빌딩 3층

Tel. 032-432-8111

홈페이지 www.vinenet.co.kr

· 신축 건물 설계 및 증축 · 대수선 설계(편의시설 설계)

(주)헤펠레 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0

Tel. 02-529-4100

홈페이지 www.hafele.co.kr

· 가구(잠금장치, 서랍레일, 접이문 부속 등)

· 문(도어핸들, 도어락장치 등)

(주)에넥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23

Tel. 02-547-9236

홈페이지 www.enex.co.kr

· 부엌 무료 설계 및 개조 상담

· 주방가구 및 주방용품

· 불박이 가구(인출식 수납장 및 옷걸이, 높이 조절형 선반 등)

· 소품가구 등

건축 재료 및 생활용품 판매 업체

태창도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홍2동 93번지

Tel. 031-734-6195

홈페이지 www.taechangdoor.co.kr

· 온돌마루, 다양한 문, 문틀재, 유압경첩, 레바도어록 등 설치

(주)와쏘텔레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82-34

Tel. 02-711-2000

홈페이지 www.wasso.co.kr

· 무선스위치 판매 및 설치

로얄토토

인천시 북구 효성동 410-19 (한국수출공단 제4단지)

Tel. 032-518-4664

· 위생설비 기기, 세면기/소변기/대변기 부속, 에어타월

성창타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88-8 제현빌딩 1층
Tel. 02-2267-9131
홈페이지 www.sungchang.kr
· 미끄럼 방지 타일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휠체어 악세사리 판매 업체

(주)대세

서울시 강동구 길동 347-12 동호빌딩 103호
Tel. 02-477-0120
홈페이지 www.daese.com

미끼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9-17 현대빌딩 101호
Tel. 02-3444-8009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1129번지
Tel. 053-562-7500
홈페이지 www.wheelchair.co.kr

대성의료기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쇼핑센터 3층 20호
Tel. 02-534-9828
홈페이지 www.wchair.com

전동스쿠터 판매 업체

케어라인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480-1 선옥빌딩 201호
Tel. 02-598-3091~4
홈페이지 www.careline.co.kr

휠로피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558-6
Tel. 02-2607-8655
홈페이지 www.wheelopia.co.kr

장애인용품 및 생활용품 전자쇼핑몰

에이블데이터

www.abledata.co.kr

시렉스

www.sirex.co.kr

좋은생활

www.ablemall.co.kr

SM월드

www.smworld.co.kr

주택 개조를 위한 자가 진단표

본 자가 진단표는 살고 있신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에 대해 살펴 보고 각 공간에서 개조할 내용이 있는지 스스로 알아 보기 위함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더 나이가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개조를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각 공간 별로 나누어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공간별로 체크된 내용 중 “그렇지 않다”의 항목에 표시된 내용들은 앞선 매뉴얼을 바탕으로 개조를 고려해야만 한다.

1. 현관

1) 현관의 단차는 1.5cm 이하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2) 현관문을 열고 통과할 수 있는 통과유혹폭은 80 cm 이상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3) 현관문을 열고 닫기 용이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4) 현관문 손잡이는 조작하기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5) 현관문 손잡이의 높이는 사용하기 적당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6) 현관문 투입구의 높이는 사용하기 적당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7) 휠체어나 그 외의 보조 기구를 수납할 공간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8) 현관을 사용할 때 조명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진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2. 거실

1) 인터폰을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2) 휠체어, 목발 등 보조 기구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활동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3) 조명 스위치 등은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4) 콘센트는 사용하기 충분한 개수이며 바닥에 전선 등이 놓여져 있지 않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5) 수납장은 사용하기 편리한 높이와 위치에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6)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되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7) 문턱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3. 침실

1) 휠체어를 사용할 때에는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2) 휠체어 사용시 침대의 높이는 45cm 정도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3) 침대 주변에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4) 침대 주변이나 잠자리 주변에는 전화기, 스위치, 콘센트 등이 손 닿는 위치에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5) 조명 스위치는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6) 장은 아불이나 옷을 수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7) 장의 문은 열고 닫기 편리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4. 부엌

1) 상부 수납장의 높이는 물건을 수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2) 상부 수납장의 손잡이는 열고 닫기 편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3) 하부 수납장에 접근이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4) 하부 수납장에 물건을 수납하기 용이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5) 작업면은 부엌일을 하는데 편안한 높이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6) 싱크대의 깊이는 너무 깊지 않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7) 수도꼭지는 조작하기 쉬운 싱글레버식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8) 개수대의 수돗물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는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9) 가스 안전 밸브는 조작하기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10) 조리 시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이 조리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11) 조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음식 냄새 등이 배기 후드를 통하여 쉽게 빠진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12) 배기 후드의 조작버튼은 작동하기 편한 위치에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13) 부엌용품 및 부엌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의 수납공간이 쉽게 손 닿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5. 욕실 (화장실)

1) 욕실 (화장실) 문의 폭은 열고 들어가기 위해(통과 유효폭) 최소75cm 이상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2) 욕실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3) 욕실문의 손잡이는 조작하기 편한 손잡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4) 욕실의 단차를 없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5)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경사로는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6) 욕실 바닥은 미끄럼지 않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7) 각각의 장애 특성에 따라 욕조 주위, 세면대 주위, 변기 주위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8) 이미 설치된 안전 손잡이는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9) 세면대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0) 세면대의 높이는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1)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조작하기 편한 싱글레버식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2) 거울의 높이와 각도는 적당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3) 변기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4) 변기의 높이는 사용하기 편리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5) 욕조를 사용하고 있다면 욕조로의 접근이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6) 욕조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7) 욕조의 수도꼭지는 온도조절이 용이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8) 욕조의 수도꼭지는 조작하기 편리한 싱글레버식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19) 욕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20) 샤워기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저절식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21) 샤워기의 수도꼭지는 조작하기 편리한 싱글레버식이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22) 샤워기 사용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미끄럼방지가 되어 있는 방수의자가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23) 욕실에서 사용되는 물품들을 수납할 공간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24) 수납장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25) 비상벨이 접근이 용이한 위치(변기나 욕조에서 혹은 바닥에 넘어졌을 때)에 설치돼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 6. 베란다
- 1) 단차를 줄여 실내에서 베란다로의 접근이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2) 바닥은 견고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3) 베란다에 세탁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면, 세탁기로의 접근이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3) 세탁기 조작버튼은 쉽게 손이 닿는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4) 세탁물을 넣고 꺼내기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5) 건조대가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 6) 건조대 역시 사용하기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7. 다용도실

1) 다용도실의 단차가 없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2) 다용도실로의 접근이 쉽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3) 충분한 수납공간이 있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4) 수납공간의 높이와 위치는 사용하기 편하다.

그렇다 () 그렇지않다 ()

**자체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매뉴얼**

초판인쇄 / 2000년 12월 29일

초판발행 / 2000년 12월 29일

펴낸이 / 이계준

펴낸곳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 1306호

전화 02-765-6835

팩스 02-765-1385

홈페이지 www.accessact.org

E-Mail accessk@nownuri.net

비매품

『이 매뉴얼은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연구

책임연구원

권오정 /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최재순 / 인천대학교 생활자원관리학과 교수

연구원

이의정 / 인천대학교 강사
하해화 / 건국대학교 대학원 주거학과 박사과정
김현정 / 전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도움을 주신 분들

자문 및 자료 협조

우인편의시설
지암메디테크
(주) 대세 메디케어
SD에이드

설문조사 협조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여성장애인회
(사)대구장애인연대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인천여성장애인연대
(사)전북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수레바퀴선교회
장애인여성공감
장애인참배움터
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
윤동한님 외 414분

주택 실태조사 협조

고덕인님 외 29분